

2027학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모집요강



01.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2026.09.07.(월) 10:00 ~ 11.(금) 18:00 까지	www.uwayapply.com
서류제출	2026.09.07.(월) 10:00 ~ 17.(목) 18:00 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성경고사성적우수자 성경·면접	2026.10.16.(금)	면접·성경·실기고사 세부사항은 10/1(목) 본교 홈페이지 대학 입학안내 공지사항 참조
학생부우수자 면접		
사회기여 및 배려자 면접	2026.10.23.(금)	
대안학교출신자 면접		
드림(PUTS인재) 면접	2026.10.30.(금)	
자유전공·신학과 ·기독교교육과 정원외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특수교육대상자, 기회균형선발제, 재외국민·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면접		
교회음악학과(정원외 포함) 실기	2026.10.31.(토)	
합격자발표	2026.11.10.(화) 13:00 부터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등록(문서등록)	2026.12.21.(월) 10:00 ~ 23.(수) 18:00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등록
미등록 총원 합격자 발표	2026.12.24.(목) 14:00 ~ 29.(화) 18:00 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등록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6.12.29.(화) 18:00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
미등록 총원 최종 등록	2026.12.30.(수) 22:00 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등록
최종 등록	2027.02.10.(수) ~ 12.(금) 17:00 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02.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전 형 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국외 외국영주 교포 자녀 ② 국외근무(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③ 기타 재외국민(국외 선교활동, 현지회사 근무 등)	자유전공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성악 피아노 오르간 뉴미디어 작곡 실용음악 -보컬, 싱어송라이터 -기악(건반, 드럼, 기타, 베이스)	3명
입학정원 비제한	①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 재외국민 ② 전교육과정 국외 이수 외국인 ③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④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0명
입학정원 제한	① 북한이탈주민		8명

03. 전형방법

학 과	면접고사	실기고사
자유전공·신학과·기독교교육과	100%	-
교회음악학과		100%

1. 면접고사

1) 진행방법 : 개별면접(면접관 2인, 수험생 1인) 10분 내외

2) 평가영역

- 지원동기 및 성품
- 신앙생활과 교회활동
- 수학적능력 자질

※ 면접 고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심층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면접 및 실기고사의 운영 방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본 대학교 대학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2. 교회음악학과 실기과제곡

전공	실 기 과 제 곡	비율	비고
성악	자유곡 2곡 : 이태리가곡 1곡, 독일가곡 1곡 ※ 2곡 중 1곡은 해당 언어의 오페라 아리아도 가능(이탈리아 Aria antiche는 가곡에 해당) ※ 실기시험 시 반주자 동반(수험생 한 명당 반주자 한 명 동행) ※ 원어로 암보하여 연주, 가곡의 경우 조옮김 가능, 오페라 아리아는 조옮김 불가	100%	
피아노	자유곡 2곡 ※ 작곡자 제한 없음 ※ Sonata의 한 악장도 한 곡으로 인정 Bach의 평균율의 경우 Prelude와 Fuga를 합하여 한 곡으로 인정 ※ 모든 곡은 암보하여 연주	100%	
오르간	1 ① 피아노 자유곡 1곡, ② 오르간 자유곡 1곡	100%	
	2 피아노 자유곡 2곡 (소나타의 경우 빠른 악장)	100%	
	3 시대가 다른 오르간 자유곡 2곡	100%	
※ 1, 2, 3 중 택일, 피아노 곡은 피아노로, 오르간 곡은 오르간으로 암보하여 연주			
뉴미디어 작곡	작곡실기(3시간) : 다음 ①과 ②중 택 1 ① 주어진 동기에 의한 피아노곡 작곡 - 형식은 자유 ② 주어진 가사에 의한 노래곡 작곡(피아노 반주 또는 코드 기입) ①, ②번 모두 피아노 사용 가능, 가사는 시험 당일 제시	60%	
	연주 : 자유곡 1곡 (피아노 외의 악기는 지원자가 지참할 것, 암보하지 않아도 됨)	40%	
지휘	지휘실기(합창단 없음, 피아노 반주자 동반) : 노래하며 지휘하기 <지휘실기 지정곡은 원서접수 시 배부>	60%	
	① 성악 : 자유곡 1곡 - 이태리가곡 또는 독일가곡(암보하여 연주) / 반주자 동반할 것 ② 피아노(암보하지 않아도 됨) : Sonatine, Sonata 중 빠른 악장 1곡 ※ 위의 ①, ② 중 택일	40%	

전공		실 기 과 제 목	비율	비고
실용음악	보컬	자유곡 1곡	100%	1. 반주자, 반주 MR 수험생이 준비 2. 악보 제출 3. 추가 테스트 있을 수 있음
	싱어송라이터	자유곡 1곡 : 기악 연주 자작곡 1곡 : 악기 연주하며 노래 ※ 연주 악기 : 기타, 피아노	50% 50%	
	건반	자유곡 1곡 : 빠른 Passage 포함	100%	
	드럼	자유곡 1곡 : 빠른 Passage 포함	100%	
	기타	자유곡 1곡 : 빠른 Passage 포함	100%	
	베이스	자유곡 1곡 : 빠른 Passage 포함	100%	

※ 실기고사의 순서는 실기고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3. 동점자 우선순위

- 1) 외국 소재 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사람
- 2) 부모의 외국소재 근무지의 근무기간이 많은 사람

04. 지원자격

1. 공통 지원자격 안내사항

- 1) 개신교 세례·유아세례·입교 교인(유아세례만 받은 사람도 가능)으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공통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24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①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수학 결손정도 인정기준에서 제3국 수학은 인정하지 않음
 - ②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③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①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②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④ 기타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본 대학에서 판단함
- 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⑥ 국내 또는 외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인가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⑦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입학정원의 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1) 학생 이수(재학)기간 : 해외 소재 고등학교 1개 학년 포함 중·고등학교 3년 이상
- 2) 체류기간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 ①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② 부모의 경우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3)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4)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5)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지원자격	자격요건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 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거주(영주)	근무	체류	거주 재직(영주)	체류	거주 재직(영주)
국외영주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영주권이 없는 국가는 지원자격 없음)	3년	1개년 마다 3/4 이상	3년	3년	1개년 마다 2/3 이상	3년	2년	3년
국외근무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재외국민 자녀 -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기타 재외국민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자녀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국외 선교활동, 국외 파견 교직원 등								

구 분	국외 영주 교포 자녀	국외 근무 자녀	기타 재외 국민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결혼이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비고
자기소개서				●	●	●	●	본교양식
제출서류목록표	●	●	●	●	●	●		본교양식
학력사항기록표	●	●	●	●	●	●		본교양식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재학)증명서	●	●	●	●	●	● (고등학교)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전입, 전출 명시) 제출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 (고등학교)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부, 모)	●	●	●	● 학생	● 학생	● 학생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부, 모)	●	●	●	● (보호자)				
전 가족 주민등록말소 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해당자)	● (해당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외거주사실확인서) (학생, 부, 모)	●	●	●	● 학생				
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 근무(체류)기간 명시)	●	●	●					본사 인사권자 발행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 증명서(현지 자영업자)			●					
사실증명발급 신청 위임장 (학생, 부, 모)	●	●	●	● 학생	● 학생			본교양식
여권 사본 (학생, 부, 모)	●	●	●	● 학생	● 학생	● 학생		
신분증 사본(원본 대조)				●	●			
재직사실 조회동의서		●						본교양식
선교파견 사실 확인서 (국외 선교활동 자녀)			●					
외국국적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시민권 사본)					● 학생	● 학생,부모		
영주권 사본(학생,부,모)	●							해외공관장 확인
외국인 등록증(해당자에 한 하며, 앞·뒷면 모두 복사하여 제출)					● 학생	● 학생,부모		
*재정능력 입증서류					●	●		

구 분	국외 영주 교포 자녀	국외 근무 자녀	기타 재외 국민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결혼이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비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 졸업전까지 4급 제출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행 (구청, 군청)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학력 확인서							●	통일부 발행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 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전형에 중요한 사항을 위·변조,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합격자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발급기관에 조회하여 상이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합격(입학)을 취소함
- 부모의 이혼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유학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외국인 해당)
- ※ 제출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
 - 1) 재정보증인의 학비부담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 가족(부 또는 모)이어야 함
 - 2)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 이상 은행 등 예금 잔고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상 예치) 및 통장사본
 - 3)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지원자 본인이면 제출 불필요
 - 4) 재정보증인의 자산증명서 : 지원자 본인이면 제출 불필요
 - 5) 지원자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서약서(본교양식)
 - 6) 재정보증인(부 또는 모)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제출, 재정보증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 7) 표준입학허가서는 등록금 납부 완료 후 발급 가능

※ 2026년도 TOPIK(한국어능력시험) 시험일정 (<http://www.topik.go.kr> 안내 반드시 확인)

회 차	접 수 기 간	시험일 (한국 기준)	시행지역	성적 발표
제108회	2026.8.4.(화)~10.(월) 18:00(7일간)	2026.10.18.(일)	- 한국 - 아시아	2026.12.10.(목)
제109회	2026.9.1.(화)~7.(월) 18:00(7일간)	2026.11.15.(일)	- 한국 - 아시아	2026.12.22.(목)

- 해외 시험 지역의 경우 해당 현지 접수기관으로 반드시 확인. 홈페이지 참조.

※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명단(2026.04.30. 기준)

학교명	비고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 건국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송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리야드한국학교, 쯏다한국학교, 방콕한국국제학교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 테헤란한국학교, 카이로 한국학교,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프놈펜한국국제학교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5.05.30.기준

지역	가입국
아시아 (21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바레인,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인도, 우즈베키스탄, 마카오, 브루나이,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한국, 홍콩, 아르메니아, 몽골, 오만,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북아메리카 (2개국)	미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남아메리카 (30개국)	브라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볼리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우루과이, 콜롬비아, 파라과이, 멕시코,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가이아나
오세아니아 (9개국)	뉴질랜드, 마셜제도, 쿡제도, 호주, 바누아투, 통가, 니우에, 사모아, 피지
유럽 (49개국)	러시아, 아일랜드, 영국, 알바니아, 몰타, 스웨덴, 체코,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조지아, 튀르키예(터키), 북키프로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벨라루스, 프랑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리히텐슈타인,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코소보, 포르투갈, 스위스, 이탈리아,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핀란드, 불가리아, 모나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키프로스, 폴란드
아프리카 (14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카보베르데, 모로코, 레소토, 보츠와나, 세이셸, 튀니지, 나미비아, 말라위, 부룬디, 스와질랜드

■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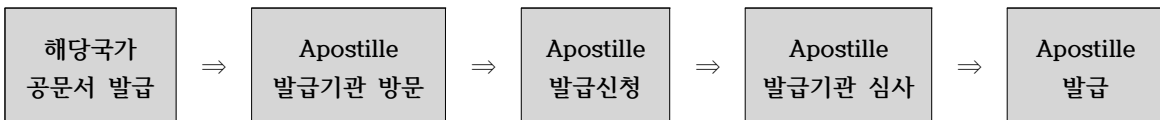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 해당 대륙 클릭 → 화면 아래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보 확인 가능

■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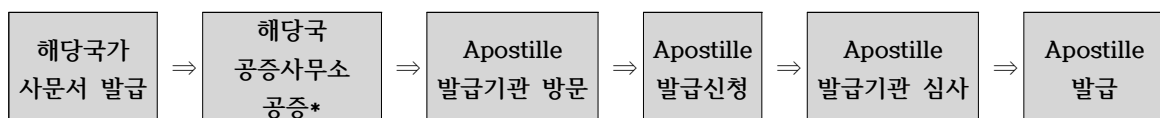
- 외국 발행문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해 각각 자국내 권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① 공문서(국·공립학교 등)



② 사문서(사립학교 등)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 본교 제출서류 양식 안내

- 경로 : 대학 입학안내 > 입시도우미 > 제출서류양식 >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https://www.puts.ac.kr/ipsi/db/db_admission_v1/sub.asp?m1=4&m2=7&m3=1
- 양식 : 담임목사추천서, 제출서류목록표, 학력사항기록표, 유학경비부담서약서,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 재직사실 조회동의서
- 본 양식은 원서접수 시 UWAYAPPLY를 통해서도 제공됩니다.

lb/db_admission_v1/sub.asp?m1=4&m2=7&m3=1

담임목사추천서	↓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추천서	↓	특수교육 신청서	↓
기회균형 학교장추천서	↓	세례교인 증명서(교회음악학과)	↓

편입학

담임목사추천서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확인서	↓
재외국민 특별전형 확인서	↓	자기소개서	↓
제출서류목록표	↓	학력사항기록표	↓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	유학경비부담서약서(재정입증서류)	↓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담임목사추천서	↓	자기소개서	↓
제출서류목록표	↓	학력사항기록표	↓
유학경비부담서약서	↓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
재직사실 조회 동의서	↓		

합격후 제출서류(공통)

약정서(교회음악학과)	↓	합격및등록포기각서	↓
학자금(등록금) 대출 상환동의서	↓		

06. 기타 사항

1. 원서접수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사이트 :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2) 원서접수 결제를 완료한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변경(개인지원자정보제외)할 수 없으며, 접수된 전형관련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 3) 원서접수 시 본인의 사진파일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4) 원서접수 시 전형에 따라 지원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다.
- 5)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불합격 처리됩니다(전형료 반환 불가).
- 6) 입력 사항이 잘못되어 불이익을 당하여도 본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7) 접수 마감 **당일(2026. 9. 11.(금) 18시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포함)를 완료해야 한다.
- 8) 실기고사, 면접고사 등에 불참하였을 경우에도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9)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원서 접수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10)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당해년도에 졸업하지 못하면 지원자격 미달로 합격(입학)을 취소한다.
- 11)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
 - 모집정원의 2% 이내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횟수의 계수 대상임. 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12) 입학지원자가 성적 석차 순위로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성적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입학사정 교수회의 결의를 거쳐 불합격시킬 수 있다.

13) 입학동의서(입학원서 접수 시 온라인 동의)

- 자유전공·신학과·기독교교육과

동 의 서

1. 본인은 장로회신학대학교가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에서 장로교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칙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이념과 교육지침에 기초한 모든 교육과정을 학교가 정하는 제도에 따라 성실히 이수한다.
3.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학칙 및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4.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지 원 자 :

- 교회음악학과

동 의 서

1. 본인은 장로회신학대학교가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에서 장로교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칙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이념과 교육지침에 기초한 모든 교육과정을 학교가 정하는 제도에 따라 성실히 이수한다.
3.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학칙 및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4.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5. (교회음악학과) 합격 후, 모집요강에 정해진 기간내에 개신교 교인 세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학취소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2. 전형료

자유전공	신 학 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85,000원	85,000원	85,000원	10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 5,000원(학교 부담)

- 1)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납부한 전형료 및 입학전형서류 또한 반환하지 않는다.**
- 2) 원서접수를 마감(전형료 결제 완료 후)한 후에는 타대학과의 고사 일자 중복, 단순 변심, 지원자격 미충족, 제출서류 미제출, 면접·실기고사 결시 등 본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 3) 다만,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 4) 부득이한 사유 : 고사 당일 천재 또는 지변, 대학의 과실, 수험자의 질병 또는 사고
 ※ 단, 수험자의 질병 또는 사고는 입증서류(입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5) 환불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전형료 반환 기준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원서접수 마감 전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30% 공제 후 반환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후부터 면접/실기 고사일 전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50% 공제 후 반환
면접/실기 고사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선발 및 발표 안내

- 1)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입학사정원칙에 따른다.
- 2) 입학지원자가 성적 석차 순위로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성적이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결의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3)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학입학전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 입학 후에 입학사정 전형자료의 허위, 부정, 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입학에 취소할 수 있으며, 입학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4. 등록 및 환불 안내

- 1)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
- 2) 본교 수시모집 합격자는 합격자 조회 화면을 통하여 “합격자 안내문”을 확인하고 반드시 등록기간에 “**문서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본 대학의 “**합격자등록(문서등록)**”은 **예치금 납부에 해당됨**.
- 3) 문서등록은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화면을 통하여 등록에 동의하면 된다.
- 4) 본교에 문서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교에 바로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문서등록을 완료한 후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교 입학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등록 불합격 처리된다.
- 6)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의 환불은 “등록포기각서”의 “환불요청”에 의한다.

5. 등록금 안내(2026학년도 기준)

구 분	수 업 료		합 계(1년)
	1학기	2학기	
자유전공·신학과 ·기독교교육과	3,235,000원	3,235,000원	6,470,000원
교회음악학과	4,677,000원	4,677,000원	9,354,000원

6. 2026학년도 지원 현황

전형구분	자유전공		신 학 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합 계	
	모집인원	지원자	모집인원	지원자	모집인원	지원자	모집인원	지원자	모집인원	지원자
재외국민(2%)	0	0	1	0	1	1	1	1	3	2
외국인		0		3		2		1		
12년 전과정		0		1		1		0		
북한이탈주민	2	0	2	1	2	0	2	0	8	1

7. 입학우수 외국인 장학금 : 1학기 전액, 한국어능력시험·학력사항·면접고사 성적으로 선발,

우수인재가 없을 경우 장학생 미선발, 2학기 이후는 기존 ‘재학생 외국인장학금’ 지원 기준으로 선발

8.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2023.04.12.)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전형 및 방법 -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학교폭력조치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 확인 후(소명), 호수에 따라 면접평가에서 등급별 감점

